

#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 
번호

2105

제출년월일 : 2011. 4. 16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개정이유

- 로보캅순찰대의 연수 및 우수대원에 대한 표창 관련 내용을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원의 사기양양과 순찰대 운영을 활성화하고
- 조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·보완하여 등·하굣길 어린이 방범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순찰대 운영의 활성화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순찰대 구성 인원수를 현실에 맞게 200명 이상으로 조문을 변경함(안 제3조)
- 나. 아침 등교 시간에 발생하는 범죄 발생 요인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현실에 맞게 오전 근무조는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근무조는 13시부터 17시까지로 확대하여 순찰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일부 조문 개정함  
(안 제4 조)
- 다. 순찰대원 상호 간의 일체감 조성 및 소양교육을 통한 로보캅 순찰대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·세미나 근거 및 우수 모범 대원을 발굴하여 사기를 높일수 있도록 조문 신설

## □ 개정조례안 : 불임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1. 3. 2. ~ 2011. 3. 21.(20일간)

## □ 기타 참고사항

- 방침결정문
- 현행조례(전문)

# **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**

## **일부개정 조례안**

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안산시 로보캅순찰대(이하 “순찰대” 라 한다)” 를 “안산시 로보캅순찰대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이라 함은” 을 “이란” 으로, “자를” 을 “사람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라 함은” 을 “란” 으로, “활동을 행하는” 을 “활동을 하는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로보캅순찰대” (이하 “순찰대” 라 한다)라 함은” 을 “안산시 로보캅순찰대” (이하 “순찰대” 라 한다) 란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200명 이하” 를 “200명 이상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제3호 및 제4호 중 “기타” 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.” 를 “오전 근무조는 7시부터 11시까지이며, 오후 근무조는 13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적극 권장하고” 를 “적극적으로 권장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“범위 내에서” 를 “범위에서”로, “장비구입” 을 “장비구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제를” 을 “공제에”로 하고, 같은 조제4항 중 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” 를 “평가를 하여야 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제5항 중 “지원할 경우” 를 “지원할 때”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사기진작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·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대원에게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6조 중 “로보캅순찰대 운영에 관한 필요한” 을 “순찰대 운영에 필요한” 으로, “에 의한” 을 “에 따른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1인” 을 “1명” 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” 를 “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” 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 를 “시행에” 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자치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손 경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자치여론담당 이 석종
	담당자 성명·전화	장 경희 (행정 2054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시장은 순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때에는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 방법,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	<p>③ ----- --- <u>공제에</u>----- -----</p> <p>④ ----- ----- -- 평가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⑤ ----- <u>지원할 때</u>----- ----- -----</p>
<p>〈신설〉</p>	<p>제5조의2(사기진작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·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대원에게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
<p>제6조(협의체) 순찰대장은 <u>로보캅순찰대 운영</u>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"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"에 의한 "안산시자치순찰 협의체"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</p>	<p>제6조(협의체) ----- <u>순찰대 운영</u> ----- <u>에 필요한</u>----- ----- <u>에 따른</u>----- -----</p>
<p>제7조 (순찰대본부의 설치) ①(생략) ② 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부요원으로 간사 및 자원봉사자 1인 이상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 ③ (생략)</p>	<p>제7조 (순찰대본부의 설치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1명</u>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실비지급) 순찰대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실비지급) ----- <u>사람</u> ----- <u>에게 예산의 범위에서</u>----- -----</p>
<p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1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----</p>

# **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의안 번호	210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1. 4. 28.  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.

## **□ 수정이유**

- 로보캅 순찰대원은 자원 봉사자로서 매일 근무하기 어려워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로 나누고, 순번에 의해 교대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상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,
-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상·하한 인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.

## **□ 주요골자**

- 순찰대 구성 인원수를 “200명 이상”에서 “300명 이상 500명 이하”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.(안 제3조제1항)

# **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**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제3조제1항 중 “200명 이상”을 “300명 이상 500명 이하”로 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순찰대는 대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적격한 자를 선발하여 <u>200명 이상</u>의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.</p> <p>1. ~ 4.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300명 이상 500명 이하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4.(현행과 같음)</p>